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8

2018-8호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4건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차권 정책 기본 조례 등 6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서울시의회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만남 등 7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 5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충청남도 당진시 「주차장법」 제8조제2항 관련 질의 등 3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5)
- ▶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 ▶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10)
- ▶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13)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17)
- ▶ 대전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 ▶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4)
- ▶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30)
- ▶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32)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39)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 서울시의회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만남 (45)
- ▶ 부산광역시의회,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 직접 챙긴다 (46)
- ▶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 기부 약정 동참 (47)
- ▶ 전북도의회, 전북-베트남 경제교류협력 강화 지원 (48)
- ▶ 광주·전남 시도의회 의원 일동 한전공대 설립 촉구 성명 (49)
- ▶ 경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슬로건 발표 (50)
- ▶ 광주시의회, 지역 대학 살리기 나서 (51)

최근 제·개정 법령

- ▶ 국민연금법 시행령 (53)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4)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57)
- ▶ 학교도서관진흥법 (58)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충청남도 당진시 「주차장법」 제6조제2항 관련 질의 (60)
-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관련 질의 (64)
-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 질의 (67)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 2018. 8. 10.] [대구광역시조례 제5136호, 2018. 8. 10., 제정]

□ 주요목적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교육·주택·교통·문화·복지 관련 지원 정책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대구광역시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의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지원,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정책조정회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제6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의 실·국·본부장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인구정책총괄부서장이, 서기는 인구정책담당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교육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등에 있어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교육희망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5112호, 2018. 8. 1., 제정]

□ 주요목적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조정 및 평가
3. 광주형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4.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평가
5.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6.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실장, 일자리 관련 실·국장 및 시장이 지명하는 간부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 기업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다.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정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시행 2018. 8. 10.] [대전광역시조례 제5150호, 2018. 8. 10., 제정]

□ 주요목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실태조사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
4.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4. 그 밖에 창업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
 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업인
 4.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 회의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창업 촉진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8. 8. 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179호, 2018. 8. 20., 제정]

□ 주요목적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급하는 사랑의 집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랑의 집”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사랑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시장이 사랑의 집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시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모집 공고는 입주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의 건설위치, 공급세대수 및 공급면적 등 건축에 관한 사항
2. 신청자격, 신청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3.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4.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5. 입주예정일, 임대기간, 임대예정일
6. 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7. 하자 보수, 관리 책임 등 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사랑의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4조의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시장이 시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로 입주희망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한 서류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입주 가능한 시점 1개월 전까지 7일 간의 계약 체결 기간을 두고 시장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7일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할 것을 통지 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대상자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입주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① 사랑의 집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년 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입주자에게 재계약이 가능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료 등) ① 사랑의 집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임대료는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해당 월 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비) ① 사랑의 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을 말한다. 이하 “관리비”라 한다)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관리비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사랑의 집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련 법령, 조례, 임대차 계약의 준수 의무
2. 사랑의 집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시설물의 보전 및 유지 의무
4. 시장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5.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필요시 통제에 협조할 의무
6. 그 밖에 사랑의 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의무

제10조(입주자 관리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랑의 집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전대 등 계약 위반 사항, 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보수) ① 시장은 사랑의 집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할 때에는 시설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랑의 집 건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시행 2018. 8. 1.]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193호, 2018. 8. 1., 제정]

□ 주요목적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9조의2에 따라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임금조건,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어르신, 여성, 장애인, 청년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5.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5. 창업지원 사업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정책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
 2. 구 일자리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내
 4.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11명 이내(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⑤ 위원장은 별도의 소집회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일자리 지원시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 교육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 출자·출연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17조에서 정한 일자리 관련 업무 위탁 시 필요한 사업비

5.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6.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1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27.]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290호, 2018. 7. 27., 제정]

□ 주요목적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mu\text{m}$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mu\text{m}$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아동,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 등 민감 계층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장비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미세먼지 피해 예방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3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385호, 2018. 7. 31., 제정]

□ 주요목적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하 “사회적 약자”라 한다)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교통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철도, 광장·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
 - 나. 교통관련시설: 주차장·자전거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 다.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 라.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

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주민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부서 협의 및 추진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용역·행사·축제 등을 진행하는 시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반영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
3.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분석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도시기반시설·교통관련시설) 시장은 도로·철도, 광장·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제15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6조(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7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의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임기·위원의 해촉·위원장의 임무 등은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광명시 성평등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실비변상)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정의) “시민참여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0조(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규모는 60명 이내로 한다.

제31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2조(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해촉)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4조(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을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8. 8. 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564호, 2018. 8. 9., 제정]

□ 주요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관리 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제2조제2호에 따른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2년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공공시설에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청사
2.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2조에 의한 공영주차장
3. 시장이 설치한 공원,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동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전문가 자문 등)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7.]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609호, 2018. 8. 7., 제정]

□ 주요목적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 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7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을 추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성별 차이 없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대표자
4. 사회복지·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6.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7.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8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 학교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1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키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⑥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아동분과위원회) ①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표창 등)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 국제교류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아동영향평가 등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아동영향 평가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규칙, 계획, 정책 또는 사업(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을 성별, 연령별로 구성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운영한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2.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지킴이는 임기 종료 후 1년간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권리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인권조례 제정

< '18. 8. 8.(수), 18:00~20:00/ 당진시청 중회의실 >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시민단체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 인권조례 제정방안을 만들기 위한 정책 토론회란 주제로 충남도민 누구나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 참가자 대부분은 충남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가 행정부의 관리감독 체제 하에 있어 인권기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과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 새롭게 제정될 인권조례는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등 인권기구의 독립성의 확보와 기존의 자문기구로써는 제기능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필요성과 조례 제정과정에서 주권자인 도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토론회를 통하여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플 대표》

-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조례를 많은 도민들에게 인권조례의 존재를 알리고 하향식으로 불리는 행정청 중심의 인권행정은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그동안의 인권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방식은 도민들 스스로 적극적인 인권증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 제정될 인권조례에서는 인권교육의 대상을 학생, 노인 등 도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 , 현장경험이 있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구로 설치해야 실효성 있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임.

2 종합토론(5인)

① 황영란(충청남도의회 의원)

- 인권위원과 인권지킴이단으로 만 5년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을 설명하며, 각 기구마다 역할이 중복되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여 인권센터, 인권증진팀, 위원회 역할 구분 필요
- 또한 모든 행정에 성별영향평가요소가 있듯 인권영향평가요소를 추가 하여 인권행정의 보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공무원들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충남인권정책회의, 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의 실행을 위하여 충남지역의 특화된 특인권활동가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 금일 토론회에서 모든 것을 정하는 방법보다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에 기구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② 김혜영(충남인권행동 공동대표)

- 인권조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지사의 경우 선거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반인권 세력에 의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측면이 있어,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는 인권기구가 행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 있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 따라서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③ 정재영(홍성YMCA 사무총장)

- 세월호 침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현재의 한국사회가 인권을 고려할 수 있는 민주시민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인권의 확대는 시대의 흐름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이 자명함.
- 폐지된 인권조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충남인권지킴이단의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 체제구축 및 역량강화의 고도화 단계를 위한 추진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충남도민인권조례의 제정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것임.

④ 강관식(충청남도 인권증진팀장)

- 민선 5기 출범(2010.7)과 함께 논의를 시작한 충남 인권행정은 그 동안 인권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인권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권 공감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특히, 2016년은 인권도정의 해로 선포하고 도정전반에 인권가치를 접목·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방정부 최초로 UN 인권이사회 패널로 토의에 참가하여 충남의 인권행정 사례를 발표하는 등 국내 인권정책의 리더로 자리잡았으나, 인권공감대 형성 미흡, 인권 인프라(거버넌스)구축 미흡, 인권기본법 등 법률 부재의 아쉬움으로 평가함.

⑤ 장은희(충청남도 도민)

- 성소수자의 부모로서, 충남인권조례는 소수자들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함.

③ 청중토론(질의답변)

- 인권은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다를 수 없고 인권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보편타당해야 하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기에 인권법 제정이 우선해야 한다고 함.

[천안학부모연대]

- “우리가 인권을 무시하지는 것이 아닌데 토론자들이 기독교계나 보수진영에서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폐기된 충청남도 인권조례에 포함돼 있던 동성애 등 독소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지 인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힘.

[고영석 장로]

- 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인권센터 등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함.

[前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 ⇒ 행정과 도민이 가깝게 소통이 필요하며, 소통을 통한 도민들의 바람과 의견들을 모아 재제정될 충남인권조례에 담도록 하겠으며, 금일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발언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영 위원]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충남인권위원회의 인사와 기능에 대한 독립필요성
 2. 도민, 시민단체와 충남도청 간의 협업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3. 찬·반 양측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충남인권조례 재제정의 필요성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충남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 도민과 시민단체 및 충남도청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치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자치행정과)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만남

- 문병훈 의원, “서울시의회, 청년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에 반영 할 것” -

서울시의원 10인(문병훈, 이동현, 한기영, 이승미, 김호평, 김재형, 이병도, 추승우, 이경선, 정진술)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실행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청년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2018 서울청년의회’ 추진계획이 논의되었다.

청정넷은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시도하는 능동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약 300여명의 청년이 모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의제발굴을 하고 있다.

청정넷 실행위원들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수단 동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에 안정과 활력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어 청년수당, 뉴딜일자리,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같은 다양한 혁신정책 발굴과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2기 구성 △2018청년의회 제안과제 시정 반영을 위한 상호협력 △2019년도 청년정책 예산 편성 및 청년정책 2기 기본계획 수립을 협력과제로 삼았다.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서는 간담회 사전준비부터 진행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와 청년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한 서울시의원 일등은 이동현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을 간담회 대표로 선임하고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 직접 챙긴다

-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위한 자체 노력 약속 -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8월13일(월) 14시 광복회 부산지부(지부장 권병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4일(화) 16시에는 김병길(1924년생, 1990년 애족장) 애국지사가 입원치료 중인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는 등 독립유공 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13일(월) 광복회 관계자 초청간담회에서 광복회 관계자는 임시정부수립기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적극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시책 확대 등을 건의하였고, 박인영 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하였다.

또한 14일(화) 박인영 의장은 김병길 애국지사가 입원치료 중인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희생과 공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는 중국 서주(徐州)에서 적 정보탐지공작을 한 김영진(1927.7.10.생) 애국지사와 경남 진해 제51 해군항공창 점령 계획을 추진한 김병길(1924.8.10.생) 애국지사 두분이 생존해 있다.

박인영 의장은 “앞으로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여러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우국충정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산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행복한 부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 기부 약정 동참

- 제50회 임시회 폐회 후착한가정 단체 가입식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의원 전원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착한가정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7월 31일 제50회 임시회 폐회 직후인 오전 11시 20분께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착한가정 단체 가입식’이 열렸다.

이번 단체 가입식을 통해 세종시의회 의원 18명은 매달 일정 기부금을 약정하기로 했다.

단체 가입식은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제3대 세종시의회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의원 전원이 착한가정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금택 의장, 김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 상병헌 교육위원장 등 6명은 명사 착한가정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기존 가입자라고 밝혔다.

서금택 의장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웃을 챙기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착한 세종시를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며 “세종시의회가 시민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착한 의회’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대 의정 슬로건 ‘세종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에 깃든 기대와 바람대로, 세종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희망의 가치와 의미를 전했다.

한편, 착한가정 나눔 캠페인은 부모가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나눔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전북-베트남 경제교류협력 강화 지원

- 베트남 닥락성 경제교류 협력단과 간담회, 지방정부간 교류 증진 협력키로 -

전라북도의회가 ‘베트남 닥락성 경제교류 협력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 지방정부간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은 30일 의장실에서 전북뿌리산업연합회 권상식 회장과 베트남 닥락성 외무국 ‘웬 티 디엣 하인’ 국장, 닥락기계협회 ‘즈엉 지 중’ 회장 등 방문단 일행과 기계분야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송 부의장은 “닥락성과 베트남 양 지방정부간 문화와 농축산분야, 대학과 민간 교류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은 400개의 뿌리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닥락성의 전북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실질적인 경제교류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닥락성은 작년 12월 전라북도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으며, 농산물 생산과 가공, 수출로 공업과 건설,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다. 연간 커피 생산량이 45만톤으로 베트남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전라남도의회

“한전공대 설립, 차질 없이 이행하라”

- 광주·전남 시도의회 의원 일동 공동 촉구 성명 -

최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연기 및 축소 여론과 관련, 광주·전남 시·도의원들이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14일 한전공대의 설립에 차질이 없어야 한단데 공감하고, 양 시·도의회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도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100대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한전공대 설립은 광주·전남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향간의 우려에 대해 한전 측은 2022년 개교 목표에 변함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시·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인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회는 또 “한전공대는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될 에너지밸리의 거점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육성의 요람”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공과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공대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잇는 디딤돌이자 미래성장동력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포석”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회는 이어 “우리 시·도의회는 한전공대 설립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인재육성과 에너지밸리 성공을 위해 범 시도민 추진 기구를 설치해 정부와 한전, 양 시·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슬로건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슬로건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로 정하여 발표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는 경북도의회가 기존의 관행과 사고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경북의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제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슬로건의 배경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회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사실상 다당제 구조로 재편되는 의정환경 변화 뿐만 아니라,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수장이 모두 바뀌는 등 새로운 행정·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운영방향을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의회는 다당제 구조에 따른 새로운 협치와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준엄한 민심을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어 나가며, 아울러 집행부와와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하고 견제와 균형,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도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슬로건에는 경북의 밝은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경북도의회가 먼저 변화하고 새로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정 활동 방향이 잘 담겨있다” 며, “도민들의 소중한 바람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슬로건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20년 6월까지 의정활동 홍보영상과 각종 간행물, 공문서 등에 홍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의회, 지역 대학 살리기 나서

- 김동찬 의장·임미란 부의장, 2일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성명서 전달 -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과 임미란 부의장이 지역 대학 살리기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김 의장과 임 부의장은 2일 오전 교육부를 방문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 등을 고려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성명서를 전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7월 29일 광주광역시의회는 조선대가 교육부 1단계 평가에서 우수 대학(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것과 관련 지방 대학을 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1단계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40여 개 일반대학 가운데 87%가 지방 대학으로,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로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성명서를 전달한 후 김 의장과 임 부의장은 기획재정부를 방문 우범기 장기전략국장을 면담하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부족분 지원, 2019년도 광주광역시 예산 국비 적극 반영 등을 요청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8. 8. 1.]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를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일 것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제2조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근로자에 포함된다"로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30호, 2018. 8.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고,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의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며, 재신고한 임대료도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한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지원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함.

한편 임대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여 관련 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관련 제도 개선(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6조)

- 1) 임대사업자가 임대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2)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3)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4)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증액비율을 초과하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재신고한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권 부여(제45조제2항 신설)
임차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준계약서 명시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시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을 확대함(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 1) 임대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2)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

라.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단지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화(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지원하도록 함.

마.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제5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9호, 2018. 7.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신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방재신기술 이용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제출하는 지급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대(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재신기술 이용 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중소기업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급보증서 발급기관 확대(제37조제2항제4호서목 신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도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협회에서 발행한 지급 보증서를 입찰보증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함.

4.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8호, 2018. 7.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원 대상 중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대상에 주택이 반파(半破)·전파(全破)·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를 추가하고, 구호금이 지원되는 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복구비가 지원되는 학교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등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피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피해 신고기간의 연장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대상 확대(제4조제1항제1호나목)

종전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세대에만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이 반파·전파되거나 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도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하도록 함.

나.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피해 신고기간의 연장 절차 개선(제9조제4항 및 제5항)

효율적인 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피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피해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함.

다.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조정(별표 1)

- 1) 구호금이 지원되는 부상자의 기준을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확대함.
- 2)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 기준이 되는 주택의 파손 정도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의 소파(小破)는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주택의 반파는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각각 명확히 함.

3) 복구비가 지원되는 국·공립시설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하천 친수시설을 추가함.

4) 복구비가 지원되는 학교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사립 유치원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복구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조정함.

5) 복구비가 지원되는 공공시설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그 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절반씩 복구비를 부담하도록 함.

5.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68호, 2018. 2.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2조제2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 당진시 -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6조제2항 참조)

[의견18-0120, 2018. 7. 6., 충청남도 당진시]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사람이 운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말함)으로 들어가는 노외·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6호 전단에서는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 주차장 조례안」(이하 “당진시조례안”이라 함)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례안 제15조의2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준용되는 같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진시조례안 제15조의2제2항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같은 항에서는 부설·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조례안 제15조의2제2항이 법령의 위임이 있는지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6호 전단에서는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당진시조례안에 자동차용 승강기 장치가 설비되어 있는 자주식 노외·부설주차장의 설치여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에서는 자동차용 승강기 장치가 설비되어 있는 유형·방식의 자주식 노외·부설주차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주차장의 형태로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에서는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의 한 형태로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자동차용승강기를 이용한 자주식 노외주차장 구조·설비기준으로서 설치하여야 하는 승강기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도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에 대해서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한 자주식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차장법」은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주식 노외·부설주차장을 주차장 형태로 예정(하위법령으로 구체화 할 주차장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의 구조·설비는 「주차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형태를 전제로 주차장의 출입구, 입구의 구조, 주차장 내 차로의 설치 및 너비, 주차장 높이, 주차장에 설치되는 자동차용 승강기 비율 등 이라 할 것이므로,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당진시조례안에서 「주차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동차용 승강기 장치가 설비되어 있는 자주식 노외·부설 주차장의 설치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외·부설주차장에 자동차용 승강기 장치가 설비되어 있는 경우에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구조의 노외·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승강기의 설치,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는 주차장에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 그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을 이유로 당진시조례안에서 그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지(「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관련)
[의견18-0131, 2018. 7. 5., 전라남도 보성군]

【질의요지】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 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지?

【의견】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 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1조에서는 해당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 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이하 “주거밀집지역”이라 함)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으로부터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200미터(10호 미만이거나 전 세대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는 100미터이며, 이하 “이격 거리”라 함)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이 되는 주택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조례에서는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에 해당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 저수지 수면위에 설치하는 경우를 특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사업시행자라는 주관적인 사유를 이유로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대한 예외를 해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제는 이웃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도·시군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국토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인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13. 10. 24. 심판 2012헌바241 결정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기준인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 명문의 규정 없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

[의견18-0132, 2018. 7. 6., 경상남도 창녕군]

【질의요지】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이하 “창녕군조례”라 함) 제2조 제1호에서는 “‘관광 시설물’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 별표 1에서는 “산토끼노래동산”을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시설물에 입장하여 전시품과 시설물을 관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창녕군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입장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참조),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역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22. 의견 16-0245 제시사례 참조).

창녕군조례 제10조에서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7호에서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군에서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의 규정을 둔 취지는, 조례 입안 단계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후에 정책적으로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창녕군수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는 같은 조례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사유에 비하여 과도하게 특혜를 부여하는 등 합리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해석상 한계 또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이러한 한계 범위에 있는지 여부는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과 같이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동일한 면제 사유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라면, 현행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를 근거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보다는 같은 조에 호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 및 면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창녕군 조례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7호 사이의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인바, 이 점을 향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8년 8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